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6
----------	-------

발의연월일 : 2023. 3. 7.

발의자 : 신현영 · 김한규 · 김병욱
김병기 · 김정호 · 이용선
김성주 · 진성준 · 최기상
권칠승 · 설훈 · 김수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이후 주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가 발견되는 등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1. 무연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24조의

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조의2(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u></p> <p><u>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u></p> <p><u>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u></p> <p><u>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u></p> <p><u>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p><u>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u></p> <p><u>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p> <p><u>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u></p> <p><u>“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라 한</u></p> <p><u>다)를 부여할 수 있다.</u></p> <p class="list-item-l1">1. 무연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없는 사람</p> <p class="list-item-l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 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 부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p class="list-item-l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p>

<p>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 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1. ~ 9. (생 략) ② ~ ⑦ (생 략)</p>	<p>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p> <p>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p>
---	--